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 (Santa Clara Valley Transportation Authority, VTA) 제6장

대국민 약속

실리콘밸리의 중심인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20%가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인구가 170 만 명인 이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VTA 는 이같은 고객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우리의 정책,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과 과정을 통해 고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기회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어느 누구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VTA 의 교통 서비스, 프로그램 및 정보를 의미 있게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VTA 는 저소득층, 소수인종 및 제한된 영어구사력을 가진 사람들이 VTA 의 서비스와 프로젝트, 활동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 6 장(Title VI) 및 제한된 영어구사력 및 환경적 정의에 관한 시행령(Executive Orders on 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 and Environmental Justice)의 목표를 지지합니다.

VTA 는 제 6 장에 따른 규제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VTA 는 제 6 장 및 LEP 와 관련하여 비차별 정책의 개발, 교육, 법령의 준수, 보고 및 감시에 대한 감독 및 관리가 민권실(Office of Civil Rights)이라는 하나의 부서에 집중되도록 조직되어 있습니다. VTA 의 모든 부서원들은 VTA 의 제 6 장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VTA 는 제 6 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입니다.

-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가에 상관 없이 높은 수준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사회경제적 효과를 포함하여 VTA 의 프로그램과 활동이 소수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과도한 보건 및 환경 상의 부정적 효과를 파악하여 해결할 것입니다.
-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교통정책의 결정 과정에 충분히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 소수계층 또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과 관련하여 그 혜택의 거부, 축소 또는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제한된 영어구사력을 가진 사람들이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공지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VTA)은 1964 년 민권법 제 6 장(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제 6 장에 따라 미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VTA 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되거나 그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그 밖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VTA 가 준수해야 할 제 6 장 및 기타 차별금지 의무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VTA 의 교통 서비스, 교통 프로젝트 및 연구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서비스센터 (408)321-2300/(408)321-2330 TTY 로 전화 하시거나 customer.service@vta.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문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 및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됩니다.

VTA 서비스나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되었거나 그 혜택을 거부당했거나 그 밖의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며,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그러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금지 보호규정은 VTA 의 제 3 자 계약자가 제공하는 활동 및 프로그램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VTA 또는 VTA 의 제 3 자 계약자에 대한 민원은 제 6 장 민원제기 양식(아래 참조)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408) 321-5571 로 전화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서명한 양식은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Title VI Coordinator
Office of Civil Rights
Santa Clara Valley Transportation Authority
3331 North First Street, B-1
San Jose CA 95134

서면으로 양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제기하시면 제 6 장 조정관(Title VI Coordinator)이 이를 접수하여 기록해 드립니다. 구두로 민원을 제기하려면 (408)321-5571 로 전화하십시오. 민원은 차별적 행위가 있었던 날(또는 최근 발생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원은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www.eeoc.gov; 연방교통국(FTA) www.fta.dot.gov; 또는 캘리포니아 평등고용주택부(DFEH) www.dfeh.ca.gov 등의 기관에 직접 제기해도 됩니다. 제 6 장 민원 제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민원 처리절차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VTA)은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하게 제공합니다. 또한 VTA 는 모든 시민들이 그러한 권리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사이트는 시민들이 VTA 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에 관한 법률, 그 중에서도 특히 1964 년 민권법 제 6 장(Title VI of Civil Rights Act)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 6 장은 무엇입니까?

제 6 장은 1964 년 민권법의 한 부분으로, “미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참여를 배제당하거나 그 혜택을 거절당하거나 또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6 장은 성차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인종, 피부색 및 출신국가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에 관한 다른 법에서는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영어구사력을 가진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뜻합니까?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가 아니며 영어를 읽고 말하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특정한 형태의 서비스나 혜택 또는 모임과 관련하여 언어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를 말하고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의 한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은 어떻게 제기합니까?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VTA 에게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VTA 제 6 장 조정관(Title VI Coordinator)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은 차별적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원 제기 방법

제 6 장 민원 제기 양식에 민원사항을 작성한 후 다음 주소로 보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Title VI Coordinator
Office of Civil Rights
Santa Clara Valley Transportation Authority
3331 North First Street, B1
San Jose, CA 95134

구두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제 6 장 조정관이 접수하여 기록하게 됩니다. 구두 민원의 경우, (408) 321-5571 로 전화한 후 제 6 장 조정관을 찾으십시오. 또한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www.eeoc.gov; 연방교통국(FTA) www.fta.dot.gov; 또는 캘리포니아 평등고용주택부(DFEH) www.dfeh.ca.gov 등의 외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 6 장 민원 제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VTA 와 외부 기관에 동시에 민원이 제기될 경우, 외부 기관이 VTA 에 우선하여 민원을 처리하며, VTA 의 민원 처리절차는 외부 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중단됩니다.

조사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제 6 장 조정관은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민원인이 외부 기관에 먼저 또는 외부 기관과 동시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한함).

조사는 VTA 의 모든 부서에 대한 민원을 다룹니다. 조사는 인사부와의 협조 및 그 자문을 받아 이루어집니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민원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조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변호사나 기타 자신이 선택한 대리인이 자신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증인을 통해 증언을 하게 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진행하여 완료됩니다.

접수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제 6 장 조정관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석행정관에게 제출합니다.

민원인은 60 일 기한이 지나기 전에 최종 결정 사항을 기재한 서신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조사는 30 일 이내에 종결됩니다.

민원인은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통보를 받습니다. 이의는 연방교통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평등고용주택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SANTA CLARA
Valley Transportation Authority

제 6 장 민원 제기 양식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 (VTA)
민권실

VTA 는 개정된 1964 년 민권법 제 6 장에 의거하여 어느 누구라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VTA 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참여를 배제당하거나 그러한 서비스의 혜택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6 장에 따른 민원은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의 민원을 처리하려면 아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할 때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6 장 조정관 (408) 321-5571 로 연락하십시오. 작성한 양식은 VTA 민권실(3331 North First Street, Building B-1, San Jose, CA 95134) 제 6 장 조정관(Title VI Coordinator)에게 제출합니다.

성명:	전화:
주소:	다른 전화번호:
	시, 주, 우편번호:
차별 받은 사람 (민원인 이외의 다른 사람인 경우):	
성명:	
주소 (거리명, 도시, 주, 우편번호):	

차별의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동그라미 표시)

- 인종
- 피부색
- 출신국가 (제한적인 영어구사력)

발생일: _____

어떤 차별적인 일이 있었는지 작성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차별행위에 관련된 모든 VTA 직원의 이름과 직책을 적으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작성하십시오. 공간이 더 필요하다면 이 양식의 뒷면을 사용하십시오.

커뮤니티 연계활동 및 제 6 장/LEP 관련 주소록

VTA 는 1964 년 민권법 제 6 장에 의거하여,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VTA 의 모든 교통 서비스 및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VTA 는 장애인, 소수인종, 저소득층 또는 영어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에게 기획 중인 프로그램이나 교통 서비스에 대한 변동사항을 통지하기 위한 주소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VTA 는 단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연락처를 주소록에 입력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http://apps.vta.org/title6/>) 양식을 영어로 작성하여 주소록에 추가해 주십시오. 문의 사항은 VTA (408) 321-2300, (408) 321-2330 TTY 로 전화 하시거나 customer.service@vta.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